

2012. 제3차 경찰시험(형소법)

기출문제 해답

광주서울경찰학원(seoulcop.co.kr) 담당교수 : 백거성

1. ②

해설: ②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된 자 또는 지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국민의 유죄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99헌마513)

2. ②

해설: ㉠ 구속적부심청구는 피의자에게만 인정, ㉡ 고소인, 일정범죄의 고발인에게만 인정

3. ④

해설: ④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사항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2004헌바12)

4. ④

해설: ①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기소 이후에 적용 ②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가능 ③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면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5. ①

해설: ① 고소기간은 고소대리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001도3081)

6. ②

해설: ㉠㉡이 옳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제312조 제2항, 제312조 제4항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외에 영상녹화물등 객관적 증명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도 규정하고 있다. ㉣ 이의를 진술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뿐 별도로 촬영하지는 않는다.

7. ③

해설: ③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따라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8. ④

해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

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는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 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96도18)

9. ①

해설: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1항)

10. ③

해설: ①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가능하므로 확정판결이후인 재심청구단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84도15)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은 불가하나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86도1646) ④ 증거보전청구기각 결정은 3일내 항고가능(제184조 제4항)

11. ③

해설: ㉠㉡㉢㉣이 옳다.

㉤ 기소강제절차이므로 제1심판결선고 전이라고 검사의 공소취소는 불가(제264조의2)

12. ②

해설: ㉠ 7 + ㉡ 48 + ㉢ 10 = 65

13. ④

해설: ④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불가(제266조의7 제2항)

14. ③

해설: ③ 선정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국참 제27조)

15. ①

해설: ① 간이공판절차개시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써 항고 불가.

16. ①

해설: ①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가능.(소촉 제29조)

17. ②

해설: ㉡㉢이 틀린지문이다.

㉠ 성립의 진정이 아니라 내용의 인정 (제312조 제3항) ㉣ 피고인이 아니라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18. ②

해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9. ③

해설: ① 동의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동의해도 증거능력은 부정 (2009도10092) ②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18조 제2항)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것으로 인정 받을수 없어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5도9730)

20. ④

해설: ④ 면소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는 실체판결청구권이 없어 불가하나(84도 2106)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한 사건이라면 면소판결이 위법하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가 가능하다. (2010도5986)